



제418회국회(임시회)
제7차 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년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요청 근거 마련〉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09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청년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요청 근거 마련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Ⅲ. 검토의견: 청년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요청 근거 마련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생략)	제25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2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제25조의2----- ----- ----- -----

□ 현행 「청년기본법」 제4조¹⁾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실제로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²⁾과 관련하여 신규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생년월일, 전입일, 주소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³⁾

1)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에 대하여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급하는 것임.

3) 최찬홍, “경기도-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자료 제공 놓고 갈등”, 연합뉴스, 2024.6.24. (2024.10.16.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4128100061>> 등

□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4)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청년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정책의 면밀한 수립 및 내실 있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 제25조는 자료 요청사유 및 요청대상 자료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정책자료 활용 등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자료 요청 근거를 두고 있는 입법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⁵⁾, 「농지법」⁶⁾

-
- 4)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⁷⁾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정당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⁸⁾한 점을 고려할 때, 자료 요청사유와 요청대상 자료를 범문에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제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⁹⁾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주

6) 「농지법」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8) 2003헌마282 등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민등록번호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요청사유 및 요청대상 자료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된 자료 요청사유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된 요청대상 자료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자료 요청에 대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정안의 요청사유가 광범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범위가 불분명하고, 요청대상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인 자료 요청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 추진 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청년기본법」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요청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은 자료 요청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종합하면,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11